

韓國圖書館賞 施賞內規

第1條 (目的) 이 內規는 韓國圖書館賞 施賞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表彰의 種類) 表彰의 種類는 表彰規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功績賞, 研究賞, 勤績賞으로 區分하고 이를 會長이 授與한다.

第3條 (功績賞, 研究賞) 功績賞 研究賞은 다음의 경우에 授與한다.

① 功績賞은 個人 또는 團體가 圖書館發展에 顯著한 功績이 있다고 認定되는 경우에 授與한다.

② 研究賞은 個人 또는 團體가 創意的인 研究活動을 하여 圖書館 事業과 運營에 寄與한 바 顯著한 研究業績이 認定되는 경우에 授與한다.

第4條 (勤績賞) 勤績賞은 다음과 같이 授與한다.

① 圖書館業務에 20年以上 誠實히 從事한 現職 圖書館人

② 勤績 年限의 算出은 圖書館 司書業務에 從事한 期間만을 合算하여 算出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5條 (受賞候補者의 推薦)

1. 表彰規程 第6條에 規定한 推薦者는 別紙 第2號書式에 依한 功績調書와 기타 必要한 書類를 添附하여 推薦한다.

2. 各地區協議會와 部會에서 推薦되지 아니한 對象者는 事務局에서 調査하고 別紙 第3號書式에 依하여 專門委員會 委員長이 推薦할 수 있다.

第6條 (審査委員會의 構成)

1. 會長은 表彰規程 第7條 第4項의 規定에 따라 委囑한다.

2.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7條 (委員의 身分과 手當) 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出席 委員은 豫算의 範圍內에서 手當을 支給할 있다.

第8條 (委員長의 職務)

1. 委員長은 會務를 總轄하며 會議의 議長이 된다.

2. 委員長은 別紙 第1號書式에 依하여 審査 決議書를 作成하여 表彰 豫定日 20日 前에 功績調書를 添附하여 理事會에 提出하고 認準을 要請해야 한다.

3.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고 委員長이 有故時 그 職務를 代行한다. 委員長 副委員長이 모두 有故時에는 委員中에서 呼選된 委員이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第9條 (委員會의 議事) 委員會는 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 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 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10條 (會議의 召集) 委員會는 委員長이 召集한다.

第11條 (施賞의 方法) 1. 受賞者에게는 賞牌를 授與하고 副賞은 豫算의 範圍內에서 定한다.

2. 代理者에게 施賞을 할 때에는 施賞 豫定日 3日 前에 委任狀을 提示받아야 한다.

第12條 (表彰決定의 通告) 事務局은 決定된 受賞者의 名單을 即時 推薦者 또는 本人에게 通告해야 한다.

第13條 (二重 表彰의 禁止) 本規程에 依한 表彰은 同一 功績에 대하여 二重으로 施賞할 수 없다.

第14條 (表彰簿의 備置) 事務局은 表彰된 者에 대한 名簿를 別紙 第4號書式에 依하여 備置하여야 한다.

第15條 (改定) 이 內規는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 改定한다.

附 則

① 이 內規는 1969年 2月 3日부터 施行한다.

② 이 內規는 1968年에 施行되는 表彰부터 準用된 것으로 看做한다.

③ 이 內規는 1974年 12月 14日 改定 施行한다.